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접근성 보장 의무 주체에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 추가〉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00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검토의견	2
1. 접근성 보장 의무 주체에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 추가(안 제 19조제1항)	2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운의원 등 12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2. 3.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개인·법인 등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등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 등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접근성 보장 의무 주체에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 추가(안 제19조제1항)

가. 개정안 요지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주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를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u>국가기관</u> 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률 제20672호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u>국가기관 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u>는----- -----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 ④ (생략)	② ~ ④ (생략)

다. 검토사항

- 현행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임.
- 같은 법 제19조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접근성 보장의 주체인 ‘국가기관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함¹⁾.
 - 접근성 보장의 대상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은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 등’임²⁾.

1) 「디지털포용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

- 개정안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주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관련 개인·법인·기관 및 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임.
- 이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장애인 등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접근성 보장의 주체로 규정하려는 것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접근성 보장 규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현행법 제6조³⁾에 따르면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인 지능정보사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
- 둘째, 현행법 제19조제2항⁴⁾에 따르면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

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3) 「디지털포용법」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디지털포용법」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

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
정함.

- 셋째, 현행법은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1조⁵⁾에 따르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
근성 품질인증을 할 수 있고,
제22조⁶⁾에서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및 품질인증 표시, 홍보

능정보제품을 설계·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디지털포용법」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
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6) 「디지털포용법」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
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접근성 품질
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넷째, 현행법 제23조7)에 따르면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선구매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즉, 현행 「디지털포용법」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접근성 보장

③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홍보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절차·유효기간,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지정취소·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우선구매 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위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품질인증 및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민간사업자에게 노력 의무를 넘어서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것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함.

○ 한편, 유사한 입법례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⁸⁾(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일정 조건의 자연인은 포함하지 않는 등 의무의 대상으로 민간 전체를 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를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에 대해서도 의무화하는 경우 민간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

8) 참고자료 참조

※ 참고자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